

2026 「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」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(안)

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」에 대한 2026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7일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

□ 모집개요

○ 지원내용 :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,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

- (중균 생산·보급) 장류,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중균 생산 및 보급
- (컨설팅) 중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, 품질관리,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
- (상품화지원)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·부재료, 디자인개발비, 포장재 등 지원

○ 지원규모 : 장류·식초류 제조업체 18개소

-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: 최대 28백만원(자부담금 2,800천원)

※ 단, 사업비의 50%는 중균보급기관의 중균 생산·보급, 컨설팅 비용임

○ 모집대상

지원자격
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, 식초류 제조업 으로 등록된 식품기업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,200억원 이하 인 업체 ※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(신청제한 요건 각주 참고) ¹⁾

○ 신청방법

신청방법	제출서류
우측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★ 접수 이메일 주소 : atfood@at.or.kr	- 사업신청서(별지1), 사업계획서(2장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)(별지2) 각 1부
	- 사업자등록증명원(3개월 내), '식품제조·가공업' 영업등록증(사본) 각 1부
	- 국제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, 신청자격 확인 및 활약서(별지3) 1부
	- 재무제표('23~'25년) 1부 (신규제조업체는 설립연도부터 '25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)
	- 가점서류(해당자) : 전통식품품질인증서(사본), 토종종균지속사용확약서(별지4)

※ 제조업체 신청제한 요건

-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)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·운영(30%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·임원겸임 등)하고 있는 업체
-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
- 신청일 현재 국제·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
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
-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,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,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,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

□ 심사 및 선정

선정단계	심사 및 선정 방법
① 신청자격 확인	- 신청 제조업체 자격요건 확인(별지3) - 요건확인서에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취소
② 서면평가	-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평가 실시 후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- 평가지표(참고1)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·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③ 발표평가	-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(참고2)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-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·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18개소 최종 선정

*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학계, 연구기관, 발효미생물 등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진행

□ 추진절차 ※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① 사업추진계획 알림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: '26. 3. 27. ~
 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→ 사업대상자
- ② 사업신청서 접수 : '26. 3. 27.(금) ~ 4. 27.(월)[토, 공휴일 제외]
 - **신청서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메일(atfood@at.or.kr)로 '26. 4. 27(월)까지 제출**
 - * 제조업체 : 별지 1(사업신청서), 별지 2(사업계획서), 구비서류 제출
- ③ 제조업체 자격요건 확인 : '26. 4. 27. 주간
 - 별지 3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
- ④ 서면평가 : '26. 5. 11일 주간
 -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(사업계획서 등) 실시 후 발표 평가 대상자 선정
 - *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·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 대상 발표평가 실시
- ⑤ 발표평가 : '26. 5. 18일 주간
 -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,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
 - *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·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18개소 최종 선정
- 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및 협약 추진 : '26. 5월 중
 - 지자체, 중견보급기관, 제조업체 간 사업추진 절차, 자금집행·정산 방법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
- ⑦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결과 통보 : '26. 5월 중

□ 기타사항

- 2026년도 중견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『2026년 중견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 세부추진계획』 참고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

□ 문의처 : aT 전통식품산업육성부(061-931-0733) / 이메일 : hys@at.or.kr(접수처와 상이)